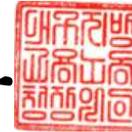
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「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 처분(자격취소)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12. 5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손○욱(47.04.18)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통지
4. 공고기간: 2023. 12. 5. ~ 2023. 12. 18.(14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백혜진(Tel. 053-667-67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